

수입·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서(신고필증)				처리기간
				7 일
양도인	①성 명		②생년월일	
	③주 소 (전화번호)		④사육장소	
양수인	⑤성 명	(인)	⑥생년월일	
	⑦주 소 (전화번호)		⑧사 육(예 정)장소	
⑨종 류				
⑩수 량				
⑪양 도 사 유		⑫수입허가용도		
「야생동·식물보호법」 제16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서명 또는 인)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귀하				
※ 구비서류				수수료
1. 수입허가증 등 양도하려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				없 음
2. 양도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부모개체의 입수경위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(양도한 종이 수입허가된 종에서 인공증식된 경우에 한합니다)				
3. 양수받으려는 자의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(보호시설이 필요한 동·식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			
제 호 수입·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필증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[인] 귀하				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